

#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36
----------	------

발의연월일 : 2026년 3월 일

발의자 : 강성삼 의원

## 1. 제안이유

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 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장 내 보안 장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상공인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원계획 내 소상공인 범죄예방 사항 신설 (안 제5조)
- 나.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 사업 근거 마련 (안 제7조)
- 다. 관련 기관·단체 등과 범죄예방 협력체계 구축 (안 제23조)

## 3. 참고사항

- 가. 개정조례안 : 덧붙임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다.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사업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3. (생 략)</p> <p><u>&lt;신 설&gt;</u></p> <p>4. (생 략)</p> <p>제7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7. (생 략)</p> <p><u>&lt;신 설&gt;</u></p> <p>8. (생 략)</p> <p>②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제7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①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사업</u></p> <p>9. (현행 제8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3조(협력체계 구축) <u>시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u></p>